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75
----------	-------

발의연월일 : 2025. 8. 21.

발의자 : 김영진 · 안호영 · 염태영
조승래 · 권칠승 · 안태준
윤후덕 · 소병훈 · 유동수
김한규 · 송기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부분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3%~5%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령연차에 따라 세율을 인하해 주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일시금 대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 중 “100분의 4”를 “100분의 3”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3나목 중 “10년을 초과하는”을 “10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인”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 천정수세율의 100분의 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p>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 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 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 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 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 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p> <p>가. (생 략)</p> <p>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u>10</u> 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 0분의 60</p> <p><u><신 설></u></p> <p>6. ~ 8. (생 략)</p> <p>② ~ ⑧ (생 략)</p>	<p>5의3. ----- ----- ----- ----- -. ----- ----- -----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u>10</u> <u>년을 초과하고 20년 이하</u> <u>인-----</u> -----</p> <p>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u>20</u> <u>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u> <u>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u> <u>0분의 50</u></p> <p>6. ~ 8. (현행과 같음)</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	--